

기 후 변 화 대 응 기 술 개 발 촉 진 법
시 행 규 칙 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8072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정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정의하고 그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조)
- 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정의하고 그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부처 협의 전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1. 7. 23. ~ 9. 1.)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술을 말하며, 그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열 및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2. 산업, 수송, 건물 부문 등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연료 및 원료를 생산·저장·운송·활용하는 기술
3. 에너지의 저장·전달·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기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술 중 복수의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산·전달·소비하는 기술
5.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온실가스를 처리 또는 흡수하는 기술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술을 말하며, 그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기상현상을 관측·조사하고 기후변화를 감시·예측하는 기술
2. 기후변화가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성을 조사·평가하는 기술
3.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전에 예방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에너지, 국토, 도시, 방재 등의 부문에 적응력을 높이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기술
4. 기후변화적응의 효과를 진단하는 기술
5. 그 밖에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되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